

경상북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법령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공고 목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도로분야 건설공사 중 시공사(도급자)가 건설 현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경상북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도 발주 도로분야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가.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다.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라.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마. 천공기(높이 10m 이상), 향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1\)}](#)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사. 그 외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4. 참가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경상북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한 업체

5. 제출자료

-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양식1 서식)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양식2 서식)
-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보유증명서), 법인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각 1부.

※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양식3 서식)은 이메일(winkji@korea.kr) 제출

6.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22. 11. 16.(수) 10:00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 '도정소식 - 알림마당'
신청서 등 제출서류	'22. 11. 16.(수) 10:00 ~ '22. 12. 09.(금) 17:00	○ 방문접수 (<u>이메일, 우편접수 무효</u>) ○ 제출장소: 경상북도청 본관 2층 도로철도과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마감일까지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접수증 교부) 미확인(접수증 미 수령)으로 인 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22. 12. 13.(화) 15:00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 '도정소식 - 알림마당'

-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7. 기타 사항

- 가. 방문접수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바랍니다. (등록시 사용인감 날인)
- 나. 수행기관 관리기간 (명부관리 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 다. 수행기관 지정은 추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시행하며,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정되며,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라.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054-880-3983)로 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향후)

구분	일정(예정)	비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별도 안내	○ 시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道 건설공사 발주부서)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평가) 및 지정	별도 안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시 공개

※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6.

경 상 북 도 지 사

- 별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3.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1부. 끝.

(별지1)

접수번호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경상북도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공개모집)

신청분야 : 토목[] 종합 []

※ 해당분야에 “ ○ ” 표기

2022. . .

회 사 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양식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	------	-----------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건축분야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기안·결재	→	등록결과 통보
--------	---	----	---	---------	---	-------	---	---------

신고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m ²	입주 연월일	
자본금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 금액 • 외국인 투자율 • 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기록 변경사항

[illegible]

(양식 3)

□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연 번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지분	지분수행실적		비 고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공사개요	발주청 (인허가 기관)	용역명	안전점검 종류	건설공사 종류**	용역기간	건수 (A)	준공금액 (백만원) (B)	비율 (C)	건수 (A*C)	지분금액 (백만원) (B*C)	
계						합계				7	310		4.5	200	
1	00도로건설 공사	00건설	'15.1.1. ~'18.12.31.	국도 0Km, 교량 0개소 터널 0개소	00청	00도로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정기(1차)	교량,터널, 절토사면	'16.1.1 ~ 6.30.	1	30	100%	1	30	
							정기(2차)	교량,터널, 절토사면	'17.1.1. ~6.30.	1	40	50%	0.5	20	
						00도로건설공사 초기안전점검	초기	교량,터널, 절토사면	'18.5.1. ~11.31.	1	90	50%	0.5	45	
2	00도로확포 장공사	00건설	'16.1.1. ~'19.12.31.	하천정비 0Km 제방보축 0Km 수문 0개소	00공사	00하천정비사업 정기안전점검	정기(1차)	교량, 터널	'17.7.1. ~12.31.	1	20	50%	0.5	10	
							정기(2차)	교량, 터널	'18.7.1. ~12.31.	1	30	50%	0.5	15	
						00하천정비사업 초기안전점검	초기	교량, 터널	'19.6.1 ~ 11.31.	1	60	100%	1	60	
3	00터널건설 공사	00건설	'15.1.1. ~'18.12.31.	지방도 0Km 터널 0Km	00도청	00건설공사 00터널정밀점검	정밀	터널, 10m이상굴착 폭발물사용	'17.1.1 ~ 12.31.	1	40	50%	0.5	20	

- 1) “정기안전점검 등”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 제1호 각항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의미합니다.
- 2) “건설공사 종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및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명시된 건설공사 종류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3) 수행실적 증빙자료로는 안전점검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하여 준공한 용역계약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설물 안전진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제출바랍니다.)